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27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판 결

사 건 2020가단96319 가등기말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7. 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지원 [redacted]등기소 2010. 11. 26. 접수 제1588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2020. 9. 11. 매매예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27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27

# 청 구 원 인

1. 피고 B 에 대하여

가. 원고(매도인)와 피고 B (매수인)이 2010.10.26.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건C호"라합니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구백칠십만엔(일본화폐단위), 계약금은 없이 잔금은 구백칠십만엔을 2010.11.10.지급,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은 근저당권(와환은행)상환대금으로 하고 매매잔금이전 가등기하기로 하고 가등기후 본등기까지 대출이자는 매수인이 2개월씩 선불하고 가등기후 본등기시 후순위 천만원에 대하여 매도인은 책임지고 말소하고 매수인이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은 명의이전에 관한 서류일체를 매수인에게 주기로 한다고 정한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건부동산매매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갑제3호증)

나. 그리고 이건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해 원고와 피고 B 은 이건C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0.11.26. 접수 제1588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10.10.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이하 "이건가등기"라합니다.)를 하였습니다.(갑제2호증)

다. 그런데 피고 B 은 잔금지급기일인 2010.11.10.이 지나도 잔금을 지급하지않아 원고가 피고 B 에게 이건부동산매매계약서 제6조에 의해 피고 B 의 채무이행 독촉 및 피고 B 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건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수회 내용증명(2015.2.26., 2015.6.29., 2016.1.12., 2016.9.7.,2017.2.8.)으로 보냈으나(갑제4호증) 피고 B 은 이에 답변을 하지않고 있다가 원고와 피고 B 은 2020.9.11.다음과 같이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음(갑제5호증)

(1) 이건부동산매매계약은 피고 B 의 채무불이행(잔금지급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미 해제되었다할 것이지만 이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 B 은 2010.10.26. 체결한 이건C호에 대한 매매계약은 피고 B 의 채무불이행(잔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건부동산매매계약서 제6조에 의하여 오늘 합의해제하기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27

(2) 원고와 피고 B은 서로 상대방에게 이건부동산매매계약과 관계된 일체의 이자, 재산세, 손해배상금등을 청구하지않기로 한다.

(3) 이건부동산매매계약이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됨으로서 이에 기초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11.26. 접수제158814호 (2010.10.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건가등기" 라합니다.)를 더 이상유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가등기권자(말소의무자)인 피고 B과 가등기의무자(말소권리자)인 원고는 오늘 이건가등기의 매매예약을 합의해제하고 이건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한다.

라. 위와같이 원고와 피고 B은 2020.9.11. 매매예약의 해제로 인한 이건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건가등기에 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압류권자(피고 B을 제외한 피고들)가 존재하여 피고 B은 압류권자들로부터 이건가등기말소승낙을 받아올 수 없어 이건가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0.11.26. 접수 제1588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2020.9.11. 매매예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2. 피고 [redacted]국(소관: [redacted]세무서), 피고 대한민국(소관: [redacted]세무서), 피고 [redacted]시(소관: [redacted]구),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redacted]국등" 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가. 피고[redacted]국(소관: [redacted]세무서)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지원 [redacted]등기소 2013.3.19. 접수 제36102호로 마친 13번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를 하여 이건가등기말소절차에서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redacted]세무서)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redacted]지방원 [redacted]지원 [redacted]등기소 2014.2.19. 접수 제26636호로 마친 13번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27

[ ]

압류등기를 하여 이건가등기말소절차에서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고,

피고 [ ]시(소관: [ ]구)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지원 [ ]등기소 2013.11.20. 접수 제165430호로 마친 13번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를 하여 이건가등기말소절차에서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D (갑제1호증)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지원 [ ]등기소 2019.8.14 접수 제93730호로 마친 13번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를 하여 이건가등기말소절차에서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입니다.

나. 이건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권리자인 원고와 말소등기의무자인 피고 B이 2020.9.11. 말소등기의무자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매매예약의 해제를 하였기 때문에 이건가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인 이건가등기에 대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등은 이건가등기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의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 증 거 방 법

갑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갑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제3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갑제4호증 내용증명
갑제5호증 인증서
갑제6호증 건축물관리대장
갑제7호증 토지대장
기타 변론시 필요에 따라 수시 제출 하겠음.

2020. . .

원 고 A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귀중

본d판결문은d판결서d인터넷열람d사이트에서d열람ø출력되었습니다r
영리목적으로d이용하거나d무단d배포를d금합니다r게시일자d:d2020q08q27

# 별지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도로명주소]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redacted] [고유번호: [redacted]]

구조 및 면적 : 일반철골구조 759.95㎡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잡종지 1115.4㎡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115.4 분의 210.41